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2011년 각각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을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 전시 등의 전승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나.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보유한 기능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무형문화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전승 가치에 공감하고 전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시설개요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관일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 사업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 연 642,017천원('23년 예산안)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제3호)

○ 추진 필요성

- 시민 이용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서울무형유산의 전문화·대중화, 대시민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 민간네트워

크를 보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 대처에 유연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전승자,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보유자 등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팀 차미래 (☎ 2133-2617)